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 2025.12.2. 공포, 2026. 12.3.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현재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교육에 주행 실습교육을 신설하되, 희망자만 이수하도록 하고, 이론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주행실습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3년간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주행실습 교육 추가(안 제7조의5제1항제6호 및 제2항 단서 신설)

- 1) 교통안전 교육 대상에 이륜자동차 주행실습 교육을 추가하되, 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주행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3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안전교육 이수 인정기간 설정(안 제7조의5제3항 신설)

- 1)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주행실습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14. ~ 11. 23.)

3) 행정규제 : 없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륜자동차 주행실습에 관한 사항(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주행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제1항제6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각각 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다시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 교육 이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교육) ① 법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교육)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이륜자동차 주행실습에 관한 사항(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 시간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② ----- ----- ----- . 다만, 제1항제6호 에 따른 이륜자동차 주행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시 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교 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제1항 제6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주행 실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3 년으로 하며, 각각 가장 마지막 에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해 당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자등과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
의 해지 또는 만료 후 다시 체
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
전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